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08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33	김태선의원	2025. 12. 3.	2026. 3. 17.
	2215372	강선영의원	2025. 12. 18.	2026. 3. 17.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 24.)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제8항).

나. 군인의 비행(非行)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9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사·수사 자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
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생 략)</p> <p>⑧ 징계권자는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u>성폭력범죄</u> 2.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u>성희롱</u> 3. <u>군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군인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59조의3(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수사 자료를 징계처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